

제407회 임시회
' 23. 3. 16.(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조성태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3월 6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민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 인구문제 관련 전문가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 개최 및 홍보·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10, 11조)
-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 (안 제14조)
 - (현행) 20명 이내 → (개정) 25명 이내
-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함. (안 제20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육아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9조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조례 상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8조(인구정책사업) 제1항제2호에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³⁾에 따라 보조금 지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3)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출산육아수당의 신청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특히 신청대상 규정에 있어 부 또는 모의 신청이 어려운 출생아동의 경우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신청주의에 따른 지원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함.
 - 안 제9조 제4항은 본 조례안에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육아수당의 지원대상, 금액,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산육아수당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가 및 유관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해야 할 것임. 특히 출산육아수당의 연령별 지원액을 정함에 있어, 출생아동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가계 부담 수준 및 정부 지원액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10조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본 조항은 현행 제16조(포럼 등 운영)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조항의 내용 중 ‘운영’이란 용어는 어떤 조직·기구 등을 운용하고 경영한다는 뜻으로 상시성을 수반하고 있어 본 조항에 따른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음. 이에 본 용어를 ‘개최’로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 제9조 및 제30조의2 등⁴⁾에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권고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본 사업의 추진은 인구정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4조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 에서 “25명 이내” 로 증원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⁵⁾에 따른 도 차원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의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해당 집행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한 계획 수립·변경 심의 및 자문 등 위원회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보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심의, 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7조는**, 인용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한 것임.

- (현행) 「충청북도 포상 조례」 → (개정안) 「충청북도 포상조례」

4)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 라 한다)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 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 안 부칙 제2조(출산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는,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에 관한 제9조의 개정 규정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까지 소급적용을 명시한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육아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감소대응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된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다만, 출산육아수당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본 제도가 목표하는 출산·육아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 끼친 영향 정도에 대한 평가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1

시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2년 기준)

○ 충북 출생아수 증감 순위 : 전년도 7위에서 14위로 하락

☞ 대전은 '22년부터 출산양육수당(총 1,080만원) 지급, 국내 유일 출생아수 증가

○ 충북 합계출산율 증감 순위 : 전년도와 같은 7위

☞ 강원은 출산양육수당 국내 최다(총 2,880만원), 출생아 및 출산율 상위권(2위)
(단위: 천 명, %, 가임여성 1명당)

구분	출생아 수(인구 천명당 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⁶⁾ 1명당)				
	2020	2021	2022	증감	증감률	순위	2020	2021	2022	순위	증감률
전국	272.3	260.6	249.0	-11.5	-4.4		0.84	0.81	0.78		-3.7
특·광역시	114.6	110.7	105.0	-5.7	-5.2		0.74	0.72	0.69		-6.3
서울	47.4	45.5	42.5	-3.0	-6.7	12	0.64	0.63	0.59	17	-5.4
부산	15.1	14.4	14.1	-0.3	-2.2	4	0.75	0.73	0.72	16	-0.7
대구	11.2	10.7	10.1	-0.5	-4.9	7	0.81	0.78	0.76	14	-3.6
인천	16.0	14.9	14.5	-0.5	-3.3	5	0.83	0.78	0.75	15	-4.1
광주	7.3	8.0	7.4	-0.5	-6.4	11	0.81	0.90	0.84	9	-5.7
대전	7.5	7.4	7.7	0.3	3.6	1	0.81	0.81	0.84	9	4.0
울산	6.6	6.1	5.4	-0.7	-11.8	17	0.98	0.94	0.85	8	-9.8
세종	3.5	3.6	3.2	-0.4	-10.2	16	1.28	1.28	1.12	1	-12.3
도 지역	157.7	149.9	144.1	-5.8	-3.9		0.94	0.89	0.86		-7.7
경기	77.7	76.1	75.3	-0.9	-1.1	2	0.88	0.85	0.84	9	-1.6
강원	7.8	7.4	7.3	-0.1	-1.1	2	1.04	0.98	0.97	2	-1.1
충북	8.6	8.2	7.5	-0.7	-9.0	14	0.98	0.95	0.87	7	-8.2
충남	12.0	11.0	10.2	-0.8	-7.0	13	1.03	0.96	0.91	6	-5.7
전북	8.2	7.5	7.0	-0.4	-6.0	8	0.91	0.85	0.82	13	-3.9
전남	9.7	8.4	7.9	-0.5	-6.3	10	1.15	1.02	0.97	2	-4.6
경북	12.9	12.0	11.3	-0.7	-6.1	9	1.00	0.97	0.93	4	-3.7
경남	16.8	15.6	14.0	-1.5	-9.9	15	0.95	0.90	0.84	9	-7.2
제주	4.0	3.7	3.6	-0.1	-3.4	6	1.02	0.95	0.92	5	-3.3

6) 가임여성: 15~49세

○ 충북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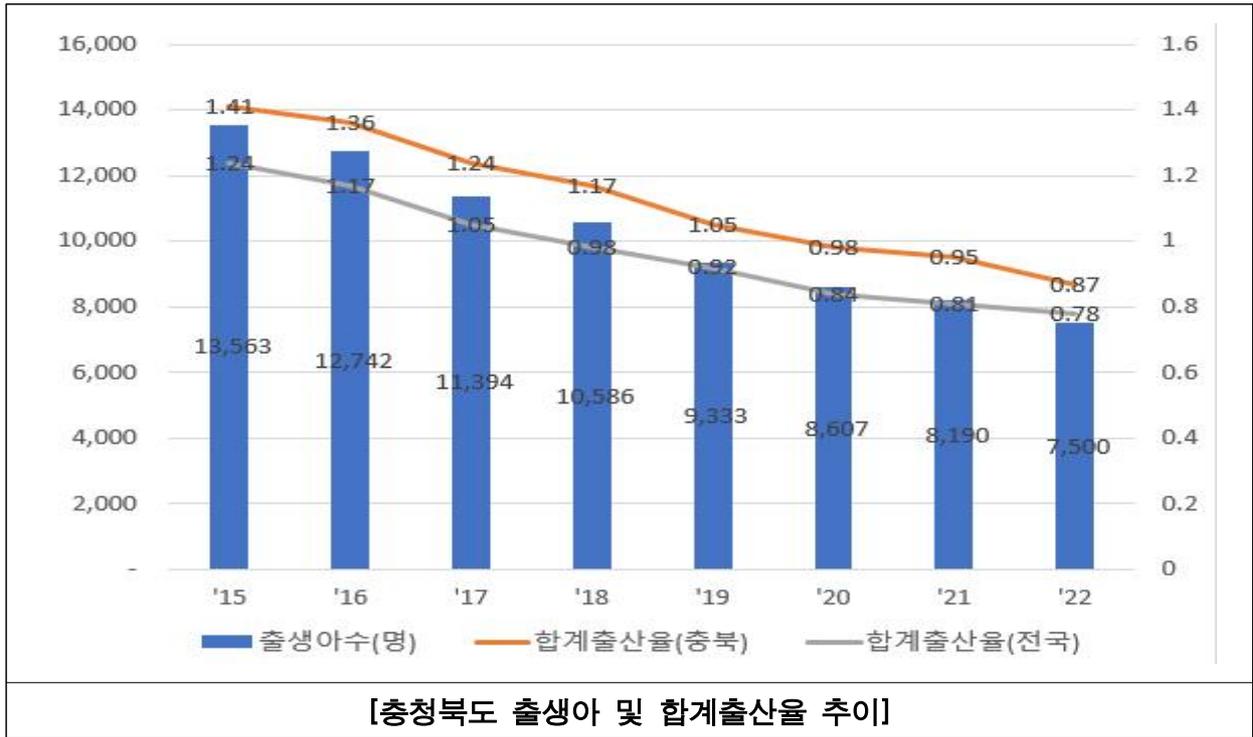
● 충북 0.87명 ⇒ 전년대비 $\Delta 0.08$ 명($\Delta 8.4\%$)

- 전국동향 : 0.78명(전년대비 $\Delta 0.03$ 명, $\Delta 3.7\%$)

- 高출산율 : 세종 (1.12명) → 강원·전남 (0.97명) → 경북 (0.93명)

- 低출산율 : 서울 (0.59명) → 부산 (0.72명) → 인천 (0.75명)

* 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충북도 내 시·군 현황

구 분	출생아(천명)	합계출산율	구 분	출생아(천명)	합계출산율
청주시	4.7	0.86	증평군	0.2	0.88
충주시	0.9	0.88	진천군	0.5	1.11
제천시	0.5	0.83	괴산군	0.1	0.80
보은군	0.1	0.96	음성군	0.3	0.82
옥천군	0.1	0.72	단양군	0.1	0.74
영동군	0.1	0.98			

참고2

타 시도별 자체 출산(양육) 지원금 현황

(단위:만원)

구분	지원구분	총액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후
부산	둘째아+	100	100						
대구	둘째아	100	100						
	셋째아+	200	200						
광주	출생아 전부	480	240						
대전	출생아 전부	1,080	360	360	360				
세종	출생아 전부	120	120						
경기도	출생아 전부	50	50						
강원도	출생아 전부	2,760	(240)*	600	600	600	360	360	240
충청남도	출생아 전부	360	120	120	120				
제주도	첫째아	50	50						
	둘째아+	1,000	200	200	200	200	200		

*(강원도) '23년 출생아의 경우만 만0세 240만원 지급(부모급여 보충지원)

*(지원금x) 서울,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경남 / (농특산물쿠폰) 경북 10